

국제 화장품 규제 업데이트 뉴스레터

2026년
08월

호주 AICIS, 소비자용 레티날 수입·제조 시 평가 인증서 의무화 발표

2026년 7월 14일, 호주 산업화학물질 도입 제도 (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AICIS)은 소비자용 레티날(Retinal)의 수입 및 제조에 대해 2026년 6월 27일부터 AICIS 평가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해당 규제 변경은 레티날이 발달 독성 물질 (Developmental Toxin)로 확인된 인체 건강 유해성 평가 (Human Health Hazard Assessment)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 범위 및 면제 사항

새로운 요건은 화장품 및 스킨케어 제품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용 제품에 사용되는 레티날(Retinaldehyde; CAS No. 116-31-4)의 수입 및 제조에 적용된다.

단, 호주 산업화학물질 목록에 이미 등재된 레티놀(Retinol, CAS No. 68-26-8) 및 레티놀 에스터(Retinol ester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필수 평가 요건

이전에는 레티날을 면제 또는 신고 도입 범주에 해당하여, 매우 낮거나 낮은 위험도의 산업용 화학물질에 적용되는 절차를 통해 수입 및 제조가 가능했다. 그러나 레티날이 발달 독성 물질로 분류됨에 따라 더 이상 이러한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소비자용 제품에 사용할 레티날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려는 사업자는 AICIS의 평가 인증서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고, 이에 따른 평가 수수료도 납부해야 한다.

규정 준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AICIS는 신청자가 유사한 위험성 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완료된 위험성 평가를 활용하고 신청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산업적 영향

기업은 자사 제품 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레티날 함유 제품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평가 절차 관련 수수료 및 승인 소요 기간을 규제 준수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australia-requires-aicis-assessment-certificate-for-retinal-used-in-cosmetics>

미국 콜로라도 주, 헤어 제품 대상 신규 화학물질 경고 의무화 법안 제정

2026년 5월 29일, 미국 콜로라도 주지사는 헤어 제품 투명성 및 안전 법(Hair Product Transparency and Safety Act)으로 알려진 하원 법안 (House Bill) 26-1135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특정 헤어 제품에 발암물질 또는 생식독성물질로 확인된 화학물질이 의도적으로 첨가된 경우, 명확하고 눈에 잘 띄는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며,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적용 범위 및 면제 사항

해당 법안은 헤어 릴렉서 제품 및 헤어 피스 제품 (헤어 익스텐션, 가발, 장식용 헤어 액세서리 포함)으로 정의되는 헤어 제품에 적용된다. 전문적인 용도로 상업 기관에만 판매 또는 유통되고 콜로라도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된다.

■ 경고 라벨 요구사항

2027년 7월 1일부터 콜로라도 주는 발암물질·생식독성물질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헤어 제품의 판매·유통(온라인 포함)을 금지한다. 단, 경고 라벨을 부착한 경우는 예외이며, 온라인 판매 시에는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존재를 알리는 경고문을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경고문은 명확하게 눈에 잘 띄어야 하며 최소 12포인트 글꼴로 표시되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첨가된 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음 경고문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 발암물질만 해당 : "이 제품에는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생식독성물질만 해당 : "이 제품에는 선천적 기형 또는 기타 생식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암물질 및 생식독성물질 모두 해당 : "이 제품에는 암, 선천적 기형 또는 기타 생식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입 제품의 경우 원래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소유자가 미국 내에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수입 업체 또는 최초 국내 유통 업체가 제조 업체로 간주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colorado-enacts-new-chemical-warning-requirements-for-hair-products>

Provided by
CHEMLINKED



REACH24H



CONTACT

Email: korea@reach24h.com

Phone: 02-6245-1610

중국 NMPA, 화장품 등록 및 신고 관리 최적화 방안 최종 확정

2026년 7월 29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NMPA)은 2026년 3월 31일에 공개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화장품 등록 및 신고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Announcement on Matters Concerning Cosmetics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를 공식 발표했다. 해당 공고는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 주요 최적화 조치

	항목	적용 범위	세부 내용
1	중국에서 신제품 최초 출시 지원	중국에서 최초로 출시 또는 다른 국가(지역)에서 동시에 출시된 해외 화장품	- 중국에서의 최초 출시 확약서 제출 시, 등록자·신고자는 본국이나 생산 국가(지역)의 사전 시장 출시 증빙 자료 제출 불필요 - 포장 디자인 초안은 등록·신고 시 생산 국가(지역)의 판매용 포장으로 제출 가능
2	기업 원료 안전 정보 관리	등록·신고 절차를 진행 중인 화장품 및 치약 제품	- 성분 안전 정보 또는 성분 제출코드 제출 면제, 성분 제조업체명만 제공 - 화장품 안전기술기준(STSC) 등 기술문서에 성분 품질 요구사항이 명시된 경우, 관련 품질규격서·시험보고서를 제품 배합 항목 또는 안전성 평가 문서에 제출 - 이미 등록·신고된 제품은 품질 사양 변경 시 업데이트, 유지 관리 또는 변경 신청 절차로 처리
3	유사 제형 제품 안전성 자료 공유	동일 등록자·신고자가 동일 브랜드의 유사 제형 제품을 다수 등록·신고하는 경우	- 대표 제품 1개를 선정하여 미생물학적·물리화학적, 독성 시험, 인체 안전성 시험 실시 후 대표성 입증 진술서 및 시험 보고서 제출 가능 - 생산시설이 다른 경우, 시설별 대표 제품에 대해 미생물학적·물리화학적 시험 별도 실시, 독성 및 인체 안전성 시험 보고서는 공유 가능 -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공유하는 대신,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지침의 유사 제품 평가 원칙에 따라 별도 안정성 평가 실시
4	생산시설 변경 시 등록·신고 요건 완화	등록자·신고자, 제품명, 제형이 변경되지 않고 시행 기준에 실질적 변경이 없는 생산 시설 이전·추가 제품	- 독성시험·인체 안전성 시험 보고서·안전성 평가 보고서·효능 평가 보고서 공유 가능 - 미생물학적·물리화학적 시험은 재실시해야 하며, 원본 등록증 또는 신고 기록 제출
5	유사 제형 제품 효능 평가 자료 공유	동일 등록자·신고자가 동일 브랜드의 유사 제형 제품을 다수 등록·신고하는 경우	- 대표 제품 1개로 효능 주장 평가 시험 실시 및 동등성 평가로 타당성 확인 후 다른 제품에 데이터 공유 가능 (공표 시 공유 사실 명시) - 미백·자외선 차단·탈모 방지 효과 주장 제품은 등록 시 효능 평가 데이터와 유사 제형 설명을 함께 제출
6	국내 책임자 변경 절차 간소화	화장품 및 치약 제품의 중국 국내 책임자 변경 시	- 기존 국내책임자의 날인이 찍힌 동의서, 변경효력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 불필요 - 신규 국내 책임자의 위임장 원본·공증 원본, 대상 제품 목록, 책임 승계 확약서만 제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china-nmpa-finalizes-measures-to-optimize-cosmetic-registration-and-notification-management-1785321565>

Provided by
CHEMLINKED

REACH24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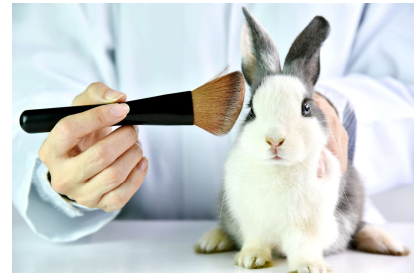
CONTACT

Email: korea@reach24h.com

Phone: 02-6245-1610

중국 NMPA, 화장품 동물실험 면제 대상 확대

2026년 7월 29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NMPA)은 '화장품 등록 및 신고 관련 사항 (Matters Concerning Cosmetic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공고를 통해 독성 시험 보고서 제출 의무 면제 대상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면제 대상 확대 범위

이번 발표에 따르면, 특정 특수화장품 (파마 제품, 비산화성 염색 제품, 물리적 커버 효과만 있는 기미 제거·미백 제품 등)은 등록 시 독성 시험 보고서 제출이 면제 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어린이용 화장품을 제외한 신규 화장품 성분을 사용하는 일반 화장품에도 면제가 적용된다.

■ 면제 대상 핵심 조건

두 가지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제조업체는 해당 제조업체가 위치한 국가 또는 지역의 관할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생산 품질 관리 시스템 자격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 ② 제품 안전성 위해 평가는 제품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규제 변경의 의미

이번 발표는 일반 화장품을 넘어 특정 특수 화장품 범주까지 동물 실험 면제 기준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기존의 엄격한 독성학적 시험 모델에서 벗어나 안전성 평가, 제조 품질 관리 및 대체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위험 기반 프레임워크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에도 규제 체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동물실험 면제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화장품 회사들의 규제 대응 방식을 변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china-opens-the-door-wider-nmpa-expands-cosmetic-animal-testing-exemptions>

Provided by
CHEMLINKED



REACH24H



CONTACT

Email: korea@reach24h.com

Phone: 02-6245-1610

인도네시아 BPJPH, 화장품에 ‘비할랄’ 표시 의무화

2026년 7월 23일,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증청 (Halal Product Assurance Organizing Agency, BPJPH)는 비할랄 (Non-Halal) 제품 표시 형식 및 절차에 관한 BPJPH 규정 제 3호(BPJPH Regulation No.3)를 제정하여 비할랄 제품에 대한 의무적인 라벨링 요건을 규정하였다. 해당 규정은 발표 즉시 발효되었다.



■ 비할랄 화장품 기준

- 성분 기반 기준 : 동물 유래, 식물 유래, 알코올, 미생물, 유전자 조작, 기타 출처

- ① 식물 유래 : 중독성이 있거나 해로운 식물,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용매 또는 첨가제를 사용하여 가공한 식물 추출물
- ② 유전자 조작 :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유전 공학적 공정을 통해 생산된 물질로, 성장 또는 제조 공정이 금지된 물질과 혼합되거나, 포함되거나, 오염된 경우

- 생산 공정 기준

- ① 포장, 유통 등에 사용되는 장소, 시설, 장비가 비할랄 물질과 공유되거나 비할랄 물질에 의해 오염된 경우
- ② 시설, 장비가 비할랄 물질(특히 돼지고기 유래 물질)과 접촉하며 할랄 제품 보증 시스템 (Sistem Jaminan Produk Halal, SJPH) 기준에 따라 세척되지 않은 경우
- ③ 원자재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생산 라인이 비할랄 제품과 분리되지 않은 경우

■ 화장품에 대한 비할랄 표시 조건

항목	세부 기준
라벨 디자인	흰색 바탕, 빨간색 직사각형 테두리 안에 빨간색 대문자로 '비할랄(NON HALAL)' 문구 표시 제품 포장이 빨간색인 경우, 다른 대비되는 색상 사용 가능
위치	소비자가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제품의 외부 포장에 적절한 비율로 표시
내구성	영구적이어야 하며 다른 그래픽, 색상, 디자인 요소에 가려지지 않아야 함.

- 대량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비할랄 제품임을 용기 등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표시물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제조업체가 발급한 분석증명서(CoA) 또는 제품 성분표 등 증빙 서류를 보관해 비할랄 제품임을 입증해야 한다.
- 이미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에는 12개월의 전환 기간이 적용되며, 2027년 7월 23일까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indonesia-mandates-non-halal-labeling-for-cosmetics>

Provided by
CHEMLINKED



REACH24H



CONTACT

Email: korea@reach24h.com

Phone: 02-6245-1610

중국 SAMR·SAC, 국가 의무 표준 ‘화장품 안전 일반 요구사항’ 승인 및 공포

2026년 8월 6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SAC)은 ‘화장품 안전 일반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s for the Safety of Cosmetics - GB 7916-2026)을 승인 및 공포했다. 해당 표준은 분산된 기술 요구사항을 ‘강제 국가표준’으로 통합하며, 2028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 두 가지 핵심 규칙

① 안전 최우선 유지

- 원자재부터 최종 제품까지 전체 공급망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을 의무적인 국가 표준의 형태로 명확하게 정의
- 금지·제한 성분, 허용되는 자외선 차단제·색소·포장재 등 용어 및 정의 표준화
- 어린이용 화장품 및 눈가·속눈썹·입술 제품의 미생물 기준을 일반 제품보다 10배 강화
- 금지 성분 목록 전면 개정 및 유해물질·위험물질에 대한 엄격한 제한 및 관리

② 산업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 증대

- 안전 요구 사항의 국가 의무 표준화로 기업 규제 준수 비용 절감
- 금지 성분에 대한 관리 요건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정의
- 사용된 성분에 따라 목표 테스트를 지정하여 안전 위험을 정확하게 관리 및 불필요한 테스트 비용 절감
- 2028년 1월 1일까지 전환 기간 설정을 통해 업계의 원활한 전환 보장

■ 6가지 주요 변화

주요 변경사항	세부 내용
표준 격상	‘위생 기준’ → 의무 국가 안전 기준
아동 보호 강화	미생물 한계치를 두 가지로 설정. 12세 미만 어린이 및 고위험 제품(눈가, 입술) 경우, 미생물 한계치는 100 CFU/g 또는 CFU/mL로 관리 (일반 제품의 1/10배 수준)
미량 불순물의 과학적 관리	국제 ISO 표준을 준수하며, 납·비소·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에 1~10mg/kg의 제한치 설정
금지 목록 확대	금지 화학물질·독성 식물·동물성 성분 확대 및 동적 업데이트 매커니즘 구축
정밀 시험 도입	획일적 종합 시험 → 원료 추적성 기반 시험 설계
충분한 전환 기간	약 2년의 전환 기간동안 기존 제품은 유통기한 만료 시까지 유통 가능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chinas-first-mandatory-national-standard-for-cosmetics-issued-general-requirements-for-the-safety-of-cosmetics-takes-effect-in-2028>

Provided by
CHEMLINKED



REACH24H



CONTACT

Email: korea@reach24h.com

Phone: 02-6245-1610

대한민국 MFDS, 씻어내지 않는 샴푸 및 옥시벤존 함유 화장품 라벨 표시 기준 개정

2026년 8월 5일,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는 '화장품 사용 주의사항 및 향료 알레르겐 표시에 관한 규정(Regulation of Labelling Cosmetics Precautions for Use and Fragrance Allergens) 최종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씻어내지 않는 샴푸에 대한 표시 의무 면제와 벤조페논-3 (Benzophenone-3 (Oxybenzone)) 함유 제품에 대한 새로운 의무 경고 표시가 신설되었다. 본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벤조페논-3에 대한 새로운 의무 표시는 2026년 9월 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변경 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씻어내지 않는 샴푸에 대한 라벨 표기 면제

- 해당 개정안은 드라이 샴푸와 같이 사용 후 즉시 헹궈내지 않는 샴푸 제품에 대해 라벨 표기 의무를 면제한다.
- "사용 후 물로 헹구지 않으면 탈모나 모발 탈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에서 제외되어, 헤어제품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경고 문구가 제거되었다.

② 벤조페논-3 (Benzophenone-3 (Oxybenzone)) 함유 화장품에 대한 새로운 의무 경고 문구 도입

- 적용 범위 : 벤조페논-3을 2.4% 초과 함유하는 제품
- 경고문 : "사용 설명서에 따라 지정된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바르지 마십시오" 라는 경고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시행일 : 해당 조항은 2026년 9월 2일부터 시행되지만, 시행일 이후 최대 6개월동안(2027년 3월 2일까지) 기존 포장재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south-korea-amends-cosmetic-labeling-for-leave-on-shampoos-oxybenzone>

Provided by
CHEMLINKED



REACH24H



CONTACT

Email: korea@reach24h.com

Phone: 02-6245-1610